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9. 1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2년 8월 30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2년 9월 6일

라. 상정일자 : 제170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2012년 9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복지국장 김찬재)

가. 제안이유

- 1) 청소년독서실 운영개선 및 관계 법령 준수 등을 위하여 청소년독서실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보완함으로써 청소년독서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청소년독서실 위치 새주소로 정비(안 제3조 별표 1)
 - 기존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비
 - 2) 사용료(사물함 사용료) 사용기준 조정(안 제5조 별표 2)
 - 기존 사물함 사용료를 사용기준에 따라 구분
 - 정기권(1개월) 사용기준 : 15,000원, 일일권(1일) 사용기준 : 500원
 - 3) 휴관일 조정(안 제6조 제1항 제1호)
 - 격주 순환 휴관을 매주 정기 휴관으로 변경
 - 격주 금요일 순환 휴무 → 매주 월요일, 목요일 또는 금요일 중 1일 정기 휴무
- ※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관일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 4) 사용료별 감면 구체화 명시 및 감면 대상자 추가(안 제7조)
 - 사용료별 감면 비율 구체화 명시
 - 사용료 감면은 입실요금은 전액 감면하며, 사물함 사용료는 정기권에 한해 1/3 감한다는 단서규정 신설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감면대상자로 추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종성)

가. 본 개정안은 청소년독서실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나. 주요내용

- 1)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시행(2011. 8. 4)으로 독서실 주소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일괄 정비함.(안 제3조 별표1)
- 2) 월별 이용자보다 일일 이용자가 많은 사물함 일일 이용 기준을 신설 규정한 것은 이용자에 대한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여겨짐.(안 제5조 별표2)
- 3) 격주 금요일 순환휴관으로 시행되었던 것을 매주 월, 목, 금요일 중 1일을 휴관할 수 있도록 정기 휴관일을 변경한 것은, 독서실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상위법에 맞게 개선하고 이용자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안 제6조제1항제1호)
- 4) 또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정의 청소년이용자에게 추가 감면 혜택 조항을 신설한 것은 출산장려정책에 따른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짐.
(안 제7조)

다. 청소년독서실은 청소년 등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써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과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이용률 제고 등 독서실 설치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와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한 것임.

4.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월 4회로 조정되는 독서실 휴관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사물함 사용료 정기권(1개월)의 금액을 산정하여 조정함

나 주요 골자

- 안 제5조 별표 2 중
“ 15,000원 ” 을 “ 13,000원 ” 으로 함.

5.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48호
----------	------------

제안년월일 : 2012. 9.

제출자 : 오현숙 위원 외 1명

1. 수정이유

- 월 4회로 조정되는 독서실 휴관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사물함 사용료 정기권(1개월)의 금액을 산정하여 조정함

2. 주요골자

- 안 제5조 별표 2 중
“ 15,000원 ” 을 “ 13,000원 ” 으로 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5조 별표 2 중

“ 15,000원 ” 을 “ 13,000원 ” 으로 함.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48 호
----------	---------

제출연월일 : 2012. 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청소년독서실 운영개선 및 관계 법령 준수 등을 위하여 청소년독서실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보완함으로써 청소년독서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독서실 위치 새주소로 정비(안 제3조 별표 1)

- 기존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비

나. 사용료(사물함 사용료) 사용기준 조정(안 제5조 별표 2)

- 기존 사물함 사용료를 사용기준에 따라 구분
 - 정기권(1개월) 사용기준 : 15,000원, 일일권(1일) 사용기준 : 500원

다. 휴관일 조정(안 제6조 제1항 제1호)

- 격주 순환 휴관을 매주 정기 휴관으로 변경
 - 격주 금요일 순환 휴무 → 매주 월요일, 목요일 또는 금요일 중 1일 정기 휴무
- ※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관일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라. 사용료별 감면 구체화 명시 및 감면 대상자 추가(안 제7조)

- 사용료별 감면 비율 구체화 명시
 - 사용료 감면은 입실요금은 전액 감면하며, 사물함 사용료는 정기권에 한해 1/3 감한다는 단서규정 신설
- 다등이 행복카드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감면대상자로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자녀 양육부담 경감)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2. 7. 26 ~ 8. 16)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사무 없음

(3) 부패심사 :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심사 결과 반영

- 사물함 사용료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물함 사용료는 정기권에 한해 1/3 감면 권고(안 제7조)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에따라”를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법령 이나”를 “법령이나”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08:00 ~ 23:00으로”를 “오전 08시 ~ 오후 11시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용하는 자”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금요일”을 “월요일, 목요일 또는 금요일 중 1일”로, “독서실간”을 “독서실의”로, “아니하게, 격주, 순환휴무”를 “않게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에 대하여”를 “청소년에게는”으로, “사용료를 전액”을 “사용료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사용료 감면은 제5조제2항 중 별표 2의 입실요금은 전액 감면하고, 사물함 사용료는 정기권에 한해 1/3을 감면한다.

제7조제5호 중 “선정된 자”를 “선정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제8조 중 “정액권”을 “정기권”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한 때”을 “발생하였을 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위반한 때”을 “위반하였을 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발생한 때”을 “발생하였을 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수탁자에 대하여”를 “수탁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고·검사결과”를 “보고·검사 결과”로, “시정을 위한 필요한”를 “시정에 필요한”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하여서는”를 “해서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하여서는”를 “사용해서는”로 한다.

제15조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16조 중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별표 1,2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휴관일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명칭 및 위치

연 번	명 칭	위 치
1	구민회관 청소년독서실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
2	영등포본동 청소년독서실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13길 8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2)
3	영등포동 청소년독서실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27길 3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49-1)
4	도림1 청소년독서실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29가길 12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 81-2)
5	도림2 청소년독서실	서울시 영등포구 도영로7길 10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 222-7)
6	양평3가 청소년독서실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서로34길 10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36)
7	양평2동 청소년독서실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53길 20-7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43-1)
8	신길3동 청소년독서실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41라길 13-8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268-4)
9	신길4동 청소년독서실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42길 1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209-102)
10	신길5동 청소년독서실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264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422)
11	신길6동 청소년독서실	서울시 영등포구 대방천로 193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741-37)
12	신길7동 청소년독서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0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897-3)
13	대림1동 청소년독서실	서울시 영등포구 디지털로 441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899-2)
14	대림2동 청소년독서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7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705)
15	청소년문화의집 독서실	서울시 영등포로64길 15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07-2)

[별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구 분

-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 기 타 : 청소년 이외의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이용을 허락한 사람

사용료 기준

구 분	사용기준	금 액
입실요금	일일권(1일)	500원
사물함사용료	일일권(1일)	500원
	정기권(1개월)	15,000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44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 ----- ----- ----- -----.</p>
<p>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이하 “청소년독서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위탁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한다.</p>	<p>제2조(적용범위) ----- ----- ----- ----- 법령이나 ----- ----- 따른다.</p>
<p>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청소년독서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p>	<p>제3조(명칭 및 위치) ----- 따라----- ----- -----.</p>
<p>제4조(청소년독서실의 이용) 청소년독서실의 이용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우선으로 하며,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을 허락한 자로 한다.</p>	<p>제4조(청소년독서실의 이용)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사람으로 -----.</p>
<p>제5조(이용시간 및 사용료) ① 청소년독서실의 이용시간은 08:00 ~ 23:00으로 한다.</p> <p>② 구청장은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p>	<p>제5조(이용시간 및 사용료) ① ----- 오전 08시 ~ 오후 11시로 -----.</p> <p>② ----- 이용하는 사람----- ----- -----.</p>

현행	개정안
<p>제6조(휴관일) ① 청소년독서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휴관일은 매주 <u>금요일</u>로 운영되, 청소년독서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근 독서실간 휴관일과 중복되지 <u>아니하게, 격주, 순환휴무.</u></p> <p>2. 3. (생략)</p> <p>4. <u>기타</u>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② (생략)</p> <p>제7조(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u>사용료를 전액</u> 감면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p> <p>1. ~ 4. (생략)</p> <p>5. 「아동복지법」에 따라 <u>소년, 소녀</u> 가정으로 <u>선정된 자</u></p> <p>6. 7. (생략)</p> <p><u>〈신설〉</u></p> <p>8. <u>기타</u>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제8조(사용료 반환) 구청장은 이미</p>	<p>제6조(휴관일) ① ----- -----</p> <p>1. ----- <u>월요일, 목요일 또는 금요일 중 1일</u>----- ----- <u>독서실의</u> ----- ----- <u>않게 한다.</u></p> <p>2.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사용료 감면) ----- ----- <u>청소년에게는</u> ----- <u>사용료를</u> ----- <u>단, 사용료 감면은 제5조제2항 중 별표 2의 입실요금은 전액 감면하고, 사물함 사용료는 정기권에 한해 1/3을 감면한다.</u></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u>선정된 사람</u></p> <p>6. 7. (현행과 같음)</p> <p><u>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u></p> <p>9. <u>그 밖에</u> ----- <u>사람</u></p> <p>제8조(사용료 반환) -----</p>

현행	개정안
<p>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일권은 사용료 전액을, 정액권은 미사용 일수에 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p>	<p>----- ----- ----- -, 정기권----- -----.</p>
<p>제9조(운영의 위탁 및 관리) ①·② (생략)</p> <p>③ 청소년독서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청소년독서실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⑤·⑥ (생략)</p>	<p>제9조(운영의 위탁 및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따라 ----- -----.</p> <p>④ ----- 필요한 ----- - 범위-----.</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10조(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p> <p>1.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p> <p>2. (생략)</p> <p>3.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p>	<p>제10조(위탁의 취소 등) ----- ----- - 발생하였을 때----- -.</p> <p>1. ----- 위반하였을 때</p> <p>2. (현행과 같음)</p> <p>3. 그 밖에 ----- ----- 발생하였을 때</p>
<p>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p>	<p>제11조(지도·감독) ① ----- 수탁자에게 ----- ----- ----- ----- -----.</p>

현행	개정안
<p>② 구청장은 제1항의 <u>보고·검사결과</u>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u>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u>를 할 수 있다.</p> <p>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u>하여서는</u> 아니 된다.</p> <p>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u>사용하여서는</u> 아니 된다.</p> <p>③、④ (생략)</p> <p>제15조(손해배상)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는 <u>자가</u>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피해 상당액을 손해배상하여야 한다.</p> <p>제16조(시행규칙) 이 <u>조례에 시행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 <u>보고·검사 결과</u> ----- ----- <u>시정에 필요한</u> ----- ----- .</p> <p>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 ----- ----- ----- <u>해서</u>는----- .</p> <p>② ----- ----- <u>사용해</u> <u>서</u>는-----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5조(손해배상) ----- ----- <u>사람이</u> ----- ----- ----- .</p> <p>제16조(시행규칙) -- <u>조례의 시행에</u> ----- -----</p>